

AUTOMOTIVE PROFESSIONAL ENGINEERS SOCIETY OF KOREA

(국토교통부 제 135호)

APES OF KOREA
Automotive Professional Engineers Society

차량기술에 관한

연구 | 설계 | 분석 | 조사 | 평가 | 진단 | 시험 | 감정 | 감리 | 기술판단 | 기술자문(컨설팅) | 기술지도
| 기술중재 | 자동차가격산정 등

기술사법에 규정된 기술사의 직무 기술을 보급 및 개발하고,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된 국내 최고의 차량기술 전문가 단체입니다.

자동차산업의 설계, 제조, 생산, 안전, 평가, 정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고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된 국내 최고의 차량기술 전문가 단체입니다.

- 01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
- 02 자동차 기술향상 및 정보 교환
- 03 올바른 자동차 기술 교육 및 전파
- 04 자동차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업을 통한 관련분야 제도 개선 및 보완



차량기술사는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차량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감정, 기술중재, 기술자문,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합니다.

또한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차량기술사는 차량(자동차) 및 연관 부품에 대한 설계, 연구, 시험분석, 성능평가, 기술판단, 기술지도(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행 자동차의 성능진단, 사고분석, 결함분석, 기술감정, 기술검도, 자동차에 기술에 대한 지도, 교육, 자동차 가치평가 등의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 설계

자동차 구조, 제조, 부품, 신기술, EV,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차체 설계, 새시 설계, 파워트레인 설계, 구조해석, 자동차통신, 튜닝 등에 대한 연구 및 설계

시험 · 분석

자동차의 주행 성능, 충돌, 연비, 가속, 제동, 진동, 소음, 안전장치, 전기장치, 등화장치, 자동차통신, 타이어, 고전압배터리, 모터,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율주행시스템(ADS) 등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시험 및 분석

진단 · 평가

자동차의 주행 성능, 연비, 가속, 제동, 진동, 소음, 안전장치, 전기장치, 전자시스템,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율주행시스템(ADS), 타이어, 자동차 통신, 차량화재, 중고차평가, 자동차 시세 등에 대한 진단 및 평가

기술감정(기술중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결함, 고장, 하자, 손상, 위험성 및 안전성, 연비, 가속 및 제동 성능, 진동 및 소음, 안전장치, 전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EDR(사고기록장치), 차량화재, 정비불량, 자동차수리비 등 각종 자동차 분쟁에 대한 기술감정 및 중재

기술자문(컨설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설계, 구조변경, 안전성 및 위험성 평가, 구조해석, 연비, 가속 및 제동 성능, 진동 및 소음, 신기술, EV, HEV, 자율주행시스템 등 각종 자동차 기술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기술 교육

자동차 구조, 자동차 신기술, 안전장치, 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율주행시스템(ADS), 고전압배터리시스템, 통신시스템, 정비기술, 자동차 수리견적, 자동차평가, 차량관리, 안전운전 등 각종 자동차 기술에 대한 교육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90번길 24
프리마비즈타워 210호
Tel. 1588-0937 / Fax. 02-6499-0932
Email. apes1@naver.com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차량기술사

정의 및 주요업무

차량기술사는 차량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제10조에 따라 차량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입니다.

주요업무

자동차기술, 자동차산업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자동차관련 교육, 세미나, 포럼 개최

자동차정책 및 제도개선 자문·건의

자동차안전 및 소비자보호 활동

국내외 자동차관련 단체와의 교류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조직도



기술사법

[법률 제 18425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술사의 직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규정된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315호]

□ 제58조의 5(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연혁 및 활동

연혁

- 2019.09. 국토교통부 산하 사단법인 차량기술사회 출범
- 2020.02. 자동차가격조사산정 평가기준 개정 (2016년 제정)
- 2022.10. 교통안전공단 F-PTI 업무개선을 위한 안전기준 분석 용역 협약
- 2023.04.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안전성평가 및 통합안전관리 기술 개발' 기술 용역 협약 (23.4 ~ 26. 12)

활동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서울시설공단 자동차 구매 평가위원 추천
- 서울소방재난본부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특정제품 선정심사 위원 추천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특정제품 선정심사 위원 추천
- 분회 제정 법인 감정인 등재 신청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 한국대학발명협회와 차량기술사회 업무협약 체결
- 김하나행정사 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 법무법인 이루와 업무협약 체결
-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와 업무협약 체결
- 서울특별시 소방차량 제조 구매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
- 한독상공회의소 아우스빌동 출세 및 채점위원 추천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구매사향 검토를 위한 차량기술사 추천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심사위원 추천
- 충청남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업무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구매검토를 위한 차량기술사 추천
- 강동구청 공용차량 구매사향 검토를 위한 차량기술사 추천
- 서부공원 여가센터 공용차량 구매를 위한 차량기술사 추천 요청
- 작업차량 구매사향 검토를 위한 차량기술사 추천
- 서울교통공사 23년 전기차 구매를 위한 특정제품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 국민이 안전한 전기차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개최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유무부즈만위원회 관용차량 조달구매를 위한 위원 추천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친환경 차량구매 선정심사위원회 후보자 추천